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안 번 호 6627

제안연월일: 2024. 12.

제 안 자: 교육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상정경과

의안명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발의일자	심사경과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2345호	강득구의원	2024.7.29.	○제418회 국회(임시회) 제2
				차 교육위원회(2024.9.24.)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
				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
				심사소위 회부
	제5126호	조정훈의원	2024.10.31.	o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1
				차 교육위원회(2024.11.19.)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
				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
				심사소위 회부

- 나.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24. 11. 26.)에서 강득구의원, 조정훈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1개의 법률안으로 통합·조정하여 교육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다.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교육위원회(2024. 11. 27.)는 이상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교육기관은 다양한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을 통하여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개발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감에게 등 록하여 운영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임.

그런데, 대안교육기관이 교육기관으로서 기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지원 근거는 미비한 상황으로 지방자치단체 등의 경비 지원을 도모하 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요청되고 있음. 또한, 교육활동 중에 발생 하는 사고로부터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보험이나 공 제 가입 등의 조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음.

이에 학생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배상을 위하여 대안교육기관 설립·운영자에게 보험 또는 공제 가입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취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경비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이에 대한 지도·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제10조의2 및 제20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제10조의2 및 제20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3조의2(대안교육기관 설립·운영자의 책무) 대안교육기관 설립·운영자는 대안교육기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대안교육기관 학생에게 발생하는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0조의2(대안교육기관 운영 지원) ①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안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내용 등 경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0조의2(지도·감독 등) ①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안교육기관 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안전 보호를 위하여 대안교육기관의 법령·학칙 준수, 제10조의2에 따른 지원 경비에 대한 관리·집행 등 운영 실태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 ②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안교육기관의 설립

- ·운영자에게 제1항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시설에 출입하여 그 시설·설비, 장부 등을 검사하게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 <신 설></u>	제3조의2(대안교육기관 설립・운
	영자의 책무) 대안교육기관 설
	립・운영자는 대안교육기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대안교육기관
	학생에게 발생하는 생명・신체
	<u>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u>
	으로 하는 보험이나 공제사업
	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
	치를 취하여야 한다.
<u><신 설></u>	제10조의2(대안교육기관 운영 지
	원) ①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
	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
	안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한 경
	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내용 등
	경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u><신 설></u>	<u>제20</u> 조의2(지도·감독 등) ① 교
	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안교육기관 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안전 보호를 위하여
	대안교육기관의 법령・학칙 준
	<u>수, 제10조의2에 따른 지원 경</u>

비에 대한 관리·집행 등 운영 실태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을 위하여 필요하면 조례로 정 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안교육 기관의 설립·운영자에게 제1 항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 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해 당 시설에 출입하여 그 시설· 설비, 장부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